

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7
------	-----

2018.11.28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】

-제8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11.28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
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
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
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음

나.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 해결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·운용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추진 방향

- 정부 모태펀드,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 기금 출자
-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 연계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
다. 조성형태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조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투자 의무 비율	존속기간	설립주체
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	중소기업 창업지원법	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등	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	5년 이상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
신기술사업 투자조합	여신전문 금융업법	신기술사업자	-	-	신기술사업금융업자
한국벤처 투자조합	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-	5년 이상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

라. 조합 조성 · 운영절차

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- 투자대상 (A+B+C 모두 만족)

구분	대상	비고
지역(A)	서울 소재	· 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
정의(B)	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	·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
형태(C)	창업기업 등	·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기업(7년 미만) ·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· 「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」에 의해 선정된 기업 ·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-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 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
마. 출자 필요성

-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융자 하는 금융으로,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규모 미미
-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로 돌봄·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

※ '15년말 기준(산업은행)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 540억원, 이중 민간자금 180억원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의 출자를 통해 민간 사회투자전문기관과 임팩트 투자조합을 결성·운영하기 위해, 기금의 출자 전 미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나. 임팩트투자 조합 조성

-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금융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, 사회투자전문기관과 임팩트 투자조합¹⁾(이하 “투자조합”)을 결성할 계획임.
- 임팩트 투자는 투자를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, 최근 빈곤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투자형태로 주목받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선정된 조합 운용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총 50억 규모의 투자조합을 조성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사회투자기금에서 편성된 출자금은 10억원임.

1)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조합원(운용기관)의 자금운용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고, 투자 후 발생한 투자수익은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

-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 투자조합,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 설립주체와 투자대상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고,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기관의 책임 하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 - 선정된 운용사는 기금 출자금과 자기자본, 모집한 민간자본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게 됨.
- 투자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창업중소기업, 벤처 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신기술사업자 등으로, 서울시 출자금 (최대 10억원)의 150% 이상을 해당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, 이 의무 투자비율 이행 이후에는 일반투자도 가능함.
- 한편 시는 2018년 4월 투자조합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출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²⁾를 받았으며, 해당 출자에 대한 투자조합이 2018년 11월 결성되어 당초 목표액(125억원)을 넘어선 135억원의 펀드가 조성되었음.
 - 이번 출자를 통해 결성될 투자조합 또한 유사한 조건과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.

2)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사회(임팩트)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, 원안가결

〈임팩트투자조합 조성 및 운용내역〉

- 조합명 :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
- 조합형태 : 한국벤처투자조합
- 조합결성 제안액 : 12,500백만원
 - ▶ 출자 약속금액 : 103억원 (한국모태펀드 100억원, 다담인베스트먼트 3억원)
 - ▶ 출자 의향확인금액 : 17억원 ((주)포티스 12억원, 한국남부발전주 5억원)
- 기준수익률 : 연 4% / - 관리보수 : 연 2.5%
- 우선손실충당여부 : 운용사 출자액의 100%
- 서울시내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예정액 : 2,000백만원
- 결성시기 : 2018. 11월

- 이번 2호 임팩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,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다. 임팩트투자조합 출자의 적정성

-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, 장기·저리의 융자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.
- 조성하려는 투자조합은 최대 10억원의 출자금으로 민간의 자금과 조합을 결성하여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, 현재 사회투자기금의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³⁾임.

3) 이에 시는 사회투자기금에 130억원을 추가 전출하기 위해, 2019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.

- 투자조합의 구조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고 원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,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투자조합 결성과 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.
 - 기금의 출자를 통한 첫 번째 임팩트 투자조합이 2018년 11월에 결성된 바, 관련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를 살펴본 후 추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.
 - 한편 현재 조성된 1호 투자조합의 운용사는 목표수익률 등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두 차례의 공고 후 선정된 바 있음.
- 또한 새로운 투자조합을 위한 운용사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, 2호 임팩트 투자조합인 만큼, 투자대상과 지원에 있어 1호 투자조합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나.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 해결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·운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추진 방향

- 정부 모태펀드,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
-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연계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
다. 조성형태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조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투자의무비율	존속기간	설립주체
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	중소기업 창업지원법	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등	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	5년 이상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
신기술사업 투자조합	여신전문 금융업법	신기술사업자	-	-	신기술사업금융업자
한국벤처 투자조합	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-	5년 이상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

라. 조합 조성 · 운영절차

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- 투자대상 (A+B+C 모두 만족)

구분	대상	비고
지역(A)	서울 소재	· 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
정의(B)	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	·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
형태(C)	창업기업 등	·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기업(7년 미만) ·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· 「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」에 의해 선정된 기업 ·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-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 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
마. 출자 필요성

-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융자 하는 금융으로,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규모 미미

-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로 돌봄·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

※ '15년말 기준(산업은행)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 540억원, 이중 민간자금 180억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

⑤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2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3.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
4.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

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(중소기업자의 범위)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 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(☎2133-5482)